#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28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임오경·김재원·진선미

한민수 • 박수현 • 임미애

부승찬 • 강유정 • 윤후덕

서영교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저작자, 발명가,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. 즉, 전 문체육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조해낸 다른 선수들의 것과 구 별되는 그 선수만의 기술, 자세,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일반인을 위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 들어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하여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.

이에 「지식재산 기본법」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

포함하도록 하는 것임(안 제2조, 제8조, 제34조).

법률 제 호

##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과학기술자 및 예술가"를 "과학기술자, 예술가 및 체육인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중 "문화예술계"를 "문화예술계, 체육계"로 한다.

제34조제3항 중 "연구계 및 문화예술계"를 "연구계,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기본이념) 정부는 지식재	제2조(기본이념)		
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			
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			
한다.	<u>.</u>		
1. 저작자, 발명가, <u>과학기술자</u>	1		
<u>및 예술가</u> 등 지식재산 창출	<u>자, 예술가 및 체육인</u>		
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			
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			
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			
촉진한다.	<u>.</u>	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
제8조(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	제8조(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		
수립) ①·② (생 략)	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3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	
3. 산업계, 학계, 연구계, <u>문화</u>	3 <u>문화</u>		
<u>예술계</u> 등의 지식재산 창출	예술계, 체육계		
역량 강화 방안			
4. ~ 16. (생 략)	4. ~ 16. (현행과 같음)		
제34조(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)	제34조(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)		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	③		
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,			

 학계,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
 ---연구계, 문화예술계 및 체육

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 계 ------ 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